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장학금 신청 절차 관련 FAQ

1. 미혼자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미혼자는 장학금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장학금 신청서 중 1쪽의 인적사항과, 2~4쪽에 내용을 모두 기재하신 후 4쪽에 있는 본인 서명란에 서명을 하시고(부모 서명란을 공란으로 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소득분위 산정이 미완료된 자는 해당 란을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3. 기혼자인데, 부모님께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증 사본과 납부내역을 제출해야 하나요?

→ 본인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없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자격 취득상실확인서를 출력함)

있다면, 납부한 내역과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신입생인데 2쪽에 있는 2학기에 관한 질문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 신입생은 2쪽의 2번과 4번 중 해당하는 내용에 답해주시면 됩니다.

5. 법전원 사랑·믿음·소망 장학금 추가 신청(구 옴브즈만)은 없어지는 건가요?

→ 교육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운영계획(안)」 중 소득분위 간 역전 불허 지침에 따라 2018학년도 제1학기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생에 대한 본교의 별도 이의신청 절차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인의 소득분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이의신청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6. 미혼자인데 2쪽~3쪽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소득분위란을 비워놓아도 되나요?

→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셨다면, 이의 신청 전 소득분위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 미혼자의 경우, 장학금 신청서 1페이지에 있는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부·모 각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사본 본인 부·모 각 1부
- 등기부등본 및 전월세계약서(거주상황증빙) 본인 부·모 각 1부
- 본인·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 네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9. 제출서류 중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사실증명원은 0000년도 서류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현재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 전년도인 0000년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 네 0000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0. 성적장학금과 복수 수혜가능 한가요?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 지원 장학금을 중복 수혜 가능하며, 생활비 지원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11. 3페이지에 기타 장학금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적으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미혼자의 경우 앞에서 기재할 내용은 인적사항이나 생활비, 학비 지원에 관한 것 뿐인데 이 외에 기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유를 쓰라는 건가요?

→ 3쪽 6번에 앞에 기재한 사항 외에 소명하실 내용이 추가로 없으시다면 본인의 거주 형태, 학비 및 생활비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12. 생활비나 학비 액수를 정확하게 써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청서는 신청 학기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3. 행정조교 및 연구조교 지원 시에도 장학금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법전원 행정조교 및 연구조교 선발 시, 소득분위를 고려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장학금신청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4. 서류미제출시 생계곤란 장학금만 미지급 되는것인지 기타 교내 모든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서류 미제출 시에 학생회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연구지원(학회) 장학금, 외부 장학금 중 일부는 수혜 가능합니다.

15. 기혼자의 경우 추가 서류는 본인의 부와 모의 서류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 + 아버지+어머니 세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건가요?

→ 기혼자의 경우

① 가족관계서만 본인과 배우자의 성명으로 각 1부씩 제출하시고

② 이외의 필수 증빙서류는 본인의 아버지와 본인의 어머니의 성명으로 각 1부씩 제출하셔야 합니다.

16. 어머니께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거나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도 부모님 두 분의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되나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께서 경제활동을 하시지 않으셔도, 소득이 없다는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 부모님 중 한 분의 소유 주택에서 두 분이 거주하고 계셔도 등기부등본을 각 1장씩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니요. 이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장과 주민등록등본(거주지가 출력됨) 1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8. 부모님께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데,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받나요?

→ 부모님 거주지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거주상황 증빙으로 등기부등본과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때문에 거주상황증빙이 됩니다.

19. 이번 학기에 소득분위가 N분위인데, 고지서에 등록금 감면 내역이 없습니다.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1차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고지서 감면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들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고지서 감면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 학기 중에 통장으로 순차 지급되었습니다. 휴학하는 자가 발생할 경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추천 의뢰가 올 경우 등의 사유로 장학금은 학기 중에 수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 제가 서류제출 당시에 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되지 않아 공란으로 적어서 냈는데, 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학교에서 담당자가 소득분위 산정 결과 및 이의신청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결과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